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

(이은림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60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이은림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규남, 김영철, 김용호, 김원태,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송경택, 윤종복, 이봉준, 이상욱, 이성배, 이영실, 이종태, 이종환, 임춘대, 최민규, 홍국표, 황철규 의원(24명)

##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명문화하고, 사업 절차와 내용 전반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 학교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책무, 적용범위에 관해 규정함(안 제1조~제4조).
- 나.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의 기본 방향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다.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이 내실 있게 전개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대상학교의 선정, 대상학교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마.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 구성원 대상 의견 수렴, 홍보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바.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지침서 개발·보급,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9조~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노후 학교시설을 개선하여 서울형 미래학교로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이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을 말한다.
2. “노후 학교시설”이라 함은 준공 후 40년이 지난 학교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 가. 주변 미관을 해치거나 학교시설 노후화로 인하여 학교구성원 등의 안전에 우려가 있는 시설
  - 나. 학생 수 증가, 교육여건 변화, 획일화·정형화된 구조 등으로 인하여 교육활동 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시설
  - 다.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3. “서울형 미래학교”이라 함은 노후 학교시설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여 학교구성원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 교육과정 개편 및 기후위기 대응, 기술 발전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환경

이 구축된 학교를 말한다.

4. “학교”란 제4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학생”이란 제4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6. “학교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제4호에 따른 학생

나.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 및 직원

다. 학생에게 친권을 행사할 권리와 의무가 있는 학생의 부모, 친권자나 후견인, 그 밖에 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양육하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 특성이나 학교 교육여건, 학교구성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서울형 미래학교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적용한다.

제5조(서울형 미래학교의 기본 방향)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가 다음 각 호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학생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하는 교육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설과 설비가 갖춰진 학교
2. 학교구성원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3.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친환경 학교
4. 첨단 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활동, 시설 관리 등이 이뤄질 수 있는 지능형 학교
5. 지역사회와 함께 시설과 설비를 개방·공유할 수 있는 학교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이 내실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대상 학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서울형 미래학교의 조성 기준 및 사업 추진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재정 조달 방안
5.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위한 학교구성원 등의 의견 수렴 방안
6. 그 밖에 교육감이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대상학교의 선정 및 조성 지원) ① 교육감은 시설 노후 수준, 학교 구성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대상 학교를 선정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선정 절차와 방식, 기준 등은 교육감이 정한다.

③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구성원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등의 개최

2. 공사기간 중 학생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배치, 교육과정상 체육활동을 위한 외부시설의 임차(賃借) 비용 등의 지원

3. 공사 기간 중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임시교사 설치, 학생 재배치에 따른 통학버스 배정 등의 지원 방안

제8조(의견수렴 및 홍보 등) ① 교육감과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장(이하 “대상 학교장”이라 한다)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을 위하여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대상 학교장은 서울형 미래학교의 추진 여부, 설계 방향 및 내용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과 대상 학교장은 서울형 미래학교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조성 과정에서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학교구성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토론회, 우수 학교시설 견학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지침서 등의 개발·보급)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의 조성을 위

해 필요한 지침서, 안내서 등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 비대상 사유서

##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형 미래학교 조성 지원 조례안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서울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및 노후학교 공간재구조화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절차를 명문화하고, 사업 절차와 내용 전반에 대한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여 노후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 안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조례안 검토결과,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산하에 조직(미래학교추진단) 및 아래 도표와 같이 예산을 기편성하여 시행하고 있어,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예산서 도표

### 미래학교추진단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본예산	쪽수
시설사업운영	4,009,973	
412. 그린스마트스쿨운영	3,583,712	1727
413. 학교복합시설활성화	426,261	1732
학교시설환경개선	84,826,234	
414. 그린스마트스쿨	64,470,943	1736
415. 노후교사개축	20,355,291	1744
합 계	88,836,207	

출처: 서울특별시 교육청 예산서

##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계분석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 미래 학교 추진단

(단위 : 천원)

구 분	2025년도 본예산	쪽수
시설사업운영	4,009,973	
412. 그린스마트스쿨운영	3,583,712	1727
413. 학교복합시설활성화	426,261	1732
학교시설환경개선	84,826,234	
414. 그린스마트스쿨	64,470,943	1736
415. 노후교사개축	20,355,291	1744
합 계	88,836,207	